

#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9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안 제4조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정책지원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4조 삭제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#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실·담당관의 설치) <u>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</u>을 둔다.</p> <p>제4조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3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</p> <p>제4조(정책지원관) ①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41조에 따른 <u>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관” 이라 한다)</u>을 사무처에 둔다. ② <u>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</u>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 (개정안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<u>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</u></li> <li>2. <u>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</li> <li>3. <u>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</u></li> <li>4. <u>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</u></li> <li>5. <u>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</u></li> </ol> <p>③ <u>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제6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</u>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<u>제7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5조 (생략)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제6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</u></p> <p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<u>제4조 (개정안 제5조와 같음)</u></p> <p><u>제5조 (개정안 제6조와 같음)</u></p> <p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” 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하고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제5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실·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4조 (생 략)</p>	<p>제3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</p>
<p>제5조 (생 략)</p>	<p>제4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</p>
<p>제6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7조 (생 략)</p>	<p>제5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